

구 분		
열람·서명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성명 정남철 (서명)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성명 전다운 (서명)
확 인 자	정보공개담당관	성명 김순희
작 성 자	정보공개담당관 행정7급	성명 이희준

## 2023년 제22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2023. 12.

**정보공개담당관**

(정보공개팀)

# 「 2023년 제22차 정보공개심의회 」 회의

## 〈회의개요〉

- ◆ 일 시 : 2023. 12. 18.(월) 15:00 ~ 15:53
- ◆ 장 소 : 영상회의
- ◆ 참 석
  - 심의위원 : 정남철, 전다운, 노승용, 이현수, 지준연
  - 배 석 : (간사) 정보공개팀장, (서기) 이희준 주무관
- ◆ 안 건 : 이의신청 4건
  - (2023-79) : 서울혁신파크 부지 활용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결과보고서
  - (2023-80) : 버스정책과-39307호 공문
  - (2023-81) :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건축과에서 수신한 공문(도시건축과-16731)과 조치결과 공문
  - (2023-82) : 이의신청답변서(이상반응 역학조사서)
- ◆ 심의결과(안건 순 배열)
  - (2023-79) : 기각 - 비공개
  - (2023-80) : 기각 - 비공개
  - (2023-81) : 기각 - 비공개
  - (2023-82) : 기각 - 비공개

【의안번호 2023-79 이의신청】

안건명 : 서울혁신파크 부지 활용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결과보고서

<000 위원>

첫 번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3-79호 공공개발기획담당관 소관 이의신청건을 상정합니다.

<000 주무관>

안녕하십니까. 공공개발기획담당관에 근무하고 있는 000 주무관입니다.

<000 위원>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여쭙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 서울혁신파크 부지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안으로 보이는데요. 소관부서에서는 이 해당 부지활용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결과보고서가 정보공개법 9조 1항 5호상에 의사결정 과정에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셨잖아요.

<000 주무관>

맞습니다.

<000 위원>

그러면서 지금 혁신파크 부지에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 중이라고 하는 것을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하는 근거로 삼으셨는데요. 혹시 이 혁신파크 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결과가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000 주무관>

그 사항은 우리 부서에서 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균형발전본부 서부권사업과로 업무를 이관했어요. 올해 1월에 이관했고요. 서부권사업과에서 용역을 별도로 하고 있어요. 지구단위 재정비 및 사업화방안 수립용역이라는 건인데요. 이게 금년도 10월에 발주해서 내년 12월까지 기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000 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 11월에 발주하셔서, 연구용역을 발주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000 주무관>

우리가 기본계획은 금년도 1월에 끝났고요. 그 후속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00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이게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 중이어서 미확정 개발계획이고, 그래서 공개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하려면 변경하거나 하려면 일단 국토계획법에 보면 기초조사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가 어떤 건축사사무소에서 연구용역으로 작성하신 결과보고서인 거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니까 결국 도시관리 계획인데요. 도시관리계획 수립할 때 사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기초조사잖아요. 그 기초조사에 들어가야 되는 환경성검토라든지 토지적정평가라든지 재해취약성분석, 이런 게 들어있는 것 같아서요. 혹시 지금 청구인께서 보여달라고 하는 이 결과보고서가 국토계획법상에 기초조사에 해당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000 주무관>

기초조사가 포함이 돼 있고요. 기초조사뿐만 아니고 거기 부지에 대한 기본 마스터 플랜, 기본계획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계획에 따른 타당성이라든지 적정성을 검토한 자료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확정되지 않는 자료를 공개했다가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 법에 따라서 비공개를 했습니다. 일부분만 줄 수는 있겠지만 이분은 전체 보고서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결과를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000 위원>

그런데 이 기초조사도 기초조사 플러스알파로 굉장히 풍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보고서이기는 한데 이것조차 완결된 거는 아니고 조금 더 손을 봐야 되는 그런 내용도

담겨져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이 기초조사를 반영을 해서 입안을 하셔야 될 텐데 도시관리계획 입안절차 하려면 그렇게 해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시고,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민 의견청취 가려면 아직 한참 먼 건가요?

<000 주무관>

제가 봤을 때는, 내년 12월까지 용역을 하겠다라고 봤을 때는 내년도 하반기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빠르면 7월, 8월 정도. 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000 위원>

그러면 주무관님 말씀은 어쨌거나 지금 단계에서는 주민 의견청취하려면 주민들께 보여드려야 되는 그 계획도 아직은 완성된 거는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궁금한 거는 이게 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가 이름이 일로중합건축사사무소네요. 건축사사무소에서 작성하신 이게 얼마짜리 용역인지, 혹시 이런 거 한번 쓰려면 얼마 정도 들여야 건축사사무소에서 이런 거 나오나요?

<000 주무관>

이 프로젝트는 3억 5,000 들어갔습니다.

<000 위원>

이게 건축사사무소에서 작성하신 보고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하자면 연구용역 비슷한 거로 볼 수 있을텐데 이는 그분들의 지적인 어떤 노고가 있는 보고서로 보여집니다. 공개청구가 들어왔는데 건축사분들께 이거 공개해도 되는지 제3자 의견청취 절차는 혹시 거치셨나요?

<000 주무관>

제3자 의견은 듣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용역성과물이 서울시로 왔기 때문에, 서울시로 귀속되는 거라서 3자 의견 청취는 하지 않았습시다.

<000 위원>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 보니까 여기에 직주락 시티라고 하는 게 이 혁신파크 안에 들

어가잖아요. 그런데 직주락 시티 관련해서 기자설명회 했던 자료는 공개해 줄 수 있  
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청구인한테 이거는 공개 그러면 하셨나요?

<000 주무관>

그거는 그분이 그거를 요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드리지는 않았고요. 단서를 달아서 드렸습니다.

<000 위원>

그런데 그거를 보고서도 청구인께서 그러면 그거라도 보여달라라고 하는 그런 또 요청은 그 이후에는 없었던 거지요?

<000 주무관>

없었습니다.

<000 위원>

우선 한 가지만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거는 이게 지금 공개됐을 때 부동산 투기 쪽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000 주무관>

관련이 됩니다. 개발계획이기 때문이에요.

<000 위원>

다른 위원님들 혹시 다른 추가 질문 있으신지요.

특별한 질문이 없으면 일단 주무관님 잠깐 나가 계시고요. 저희가 의결하고 다시 연  
락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심위원님 의견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000 위원>

제 의견은 소관부처 의견대로 비공개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비공개 사유는 정보공개법 9조 1항 5호상에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야 될 것 같고, 또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게 부동산개  
발 관련계획이어서 이거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까지 문제가 될 우려가 있어보입니  
다. 이게 공개되면 뭔가 부당한 이익을 그 과정에서 취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없지  
는 않아 보여서요. 저는 5호하고 8호 부동산 관련도 사유로 해서 비공개하면 좋겠다  
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기초조사 단계에서 아직 입안 단계로까지 넘어가지

도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데.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상에 이게 비공개 사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000 위원, 000 위원, 000위원>

주심위원님 의견과 같고요. 너무 초기 단계여서 비공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000 위원>

그러면 저도 기각 의견 주심위원님처럼 기각 의견에 동의하도록 하고요.

비공개 사유는 5호, 8호 해도 되겠지요?

그러면 담당자님 들어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의결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계결과 참석위원 5명 중 5명이 이의신청건을 기각한다는 의견이므로 본 안건을 기각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23-79호**는 “기각”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공개 사유는 제시해 주신 5호 이외에 8호도 해당이 될 것 같아서 둘 다 비공개 사유로 하겠습니다.

**【 의안번호 2023-80 이의신청 】**

**안건명 : 버스정책과-39307호 공문**

<000 위원>

두 번째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3-80호** 버스정책과과 소관 이의신청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소관부서 담당자께서는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00 주무관>

안녕하세요. 버스정책과 000 주무관입니다.

<000 위원>

이 건 청구인은 간단한 사안이고, 버스정책과-39307 번호까지 특정해서 문건 하나

공개청구를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라 5호 사유로 1차적으로 비공개 처분을 하셨고, 그리고 그때 하시면서 12월 31일에 이게 확정이 되면 공개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 이게 청구인이 이해했던 사유 중에 하나가 저희 문서 제목이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 검토결과 보고여서 사실 갱신 여부가 결정돼서 그 결정사항을 보고하는 문건같이 보여서 이게 아직도 검토 중인 사안인지, 이게 결정이 됐는데 그냥 갱신 시점만 1월 1일인 게 아닌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부 의사결정이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000 주무관>

검토보고서 내용은 내부 향후 갱신을 위한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존에 계획했던 것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평가를 위한 세부 평가자료들이 축적이 되고, 공항버스가 운행되면서 그런 자료들이 축적이 돼야 됐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 2019년 전후로 해서 한 2년 6개월 이상을 공항버스가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 평가자료들이 부족했고, 그런 상황에서 평가가 어렵다라는 것을 내부검토를 하고 보고까지 한 내용이고요.

실제 면허 갱신을 위해서 기간이라든가 그다음에 면허조건 이행을 위한 세부 조건들이 좀 변경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이 검토보고 이후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게 이번 주까지 완료되면 다음 주나 아니면 올해 31일 전까지 재발급이 될 예정인데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공개가 안 될 내용들이 그렇게 포함돼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래도 아직 내부 진행 중인 상황이고 공항버스 운수사업자하고 추가 협의사항들이 있어서 일단은 비공개로 했고요.

그다음에 공개 요청자하고 통화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1일 정도까지 검토하고 그다음에 발급 결정되면 그 이후에 발급되고 전문 그냥 메일로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이의신청하고 심의에 올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000 위원>

일단 안내는 잘해 주셨던 것 같고, 공개 시점까지 특정해 주신 것은 저희 법률절차상 적절하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그러면 이거 평가 가능 기간이 원래 올해 9월까지였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그게 아직까지 진행 중인 건가요?

<000 주무관>

평가의 9월 기준은 9월까지의 평가자료, 보통 1년 단위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면허가 만료되는 그해는, 12월 올해가 가기 전에는 면허 발급이 돼야 또 내년 사업이 이어지니까요. 그래서 평가를 위한 자료관리라든가 자료정리가 9월 기준인 거고요.

9월에 그게 완료되면 그 이후에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관련 평가를 하고, 면허기간 이런 것들 평가가 이루어지고, 12월 내에 갱신 여부 갱신되면 새로 면허 발급이 되는 게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000 위원>

그러면 지금도 아직 의견조회 기간 중이고 아직도 4개 업체 갱신될지 여부가 결정이 안 된 상황인가요?

<000 주무관>

지난주까지 해서 거의 완료됐고, 이게 또 기존에는 평가에 의해서 최대 6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는 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평가 안 되는 사유들이 내부 검토자료에 좀 들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냥 내년 1년만 유예해서 1년 연장해 주고 다시 평가에 의한 갱신기간 산정 형태로 2024년부터는 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000 위원>

저는 더 질문 안 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000 위원>

다른 위원들 질문이 있으신지요? 특별한 질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무관님, 잠깐만 나가 계시고 저희가 의결한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000 위원님이 먼저 말씀해 주세요.

<000 위원>

저도 실무부서에서 초기 답변하신 것처럼 5호 사유로 비공개 결정, 이의신청 기각하고, 그리고 2024년 1월 1일에 공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00 위원, 000 위원, 000위원>

주심위원님 의견과 같고요. 아직 내부검토 과정이라 비공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000 위원>

저도 주심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 주무관님 다시 들어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의결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계결과 참석위원 5명 중 5명이 이의신청건을 기각한다는 의견이므로 본 안건을 기각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23-80호는 “기각”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공개 결정입니다.

**【 의안번호 2023-81 이의신청 】**

안건명 :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건축과에서 수신한 공문(도시건축과-16731)과 조치결과 공문

<000 위원>

세 번째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3-81호 건축기획과 소관 이의신청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소관부서 담당자께서는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00 주무관>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000입니다.

<000 위원>

먼저 간단하게 이 문서의 상황을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인천에서 받으신 공문인 건가요?

<000 주무관>

네.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건축사 행정처분 의뢰를 한 건인데요. 행정처분 의뢰를 했는데 검토결과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가 2018년 00월 00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건축사법에 따르면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징계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천광역시로 안내공문을 회신한 내용입니다.

<000 위원>

지금 대상이 되는 부분은 한글문서로 거기에 기관명, 건축사분 이런 소명내용이라든지 조치내용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 그 문서인 것이지요?

<000 주무관>

일단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인천광역시에서 저희 쪽으로 보낸 공문하고 그 붙임자료들, 검토보고자료들이 있고요. 저희가 징계시효 관련해서 건축물 하고 건축사에 대한 안내공문을 회신한 공문이거든요.

<000 위원>

대부분이 다 개인정보나 공개해서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인 것 같아서 지금 비공개 의견 주시는 거지요?

<000 주무관>

맞습니다.

<000 위원>

저는 뭐 특별한 다른 질문이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000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건축사법에 보면 서울특별시로 요청을 한 거는 징계사유가 있을 때 징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징계를 하도록 돼 있고, 시도지사는 징계요청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천 쪽에서 보낸 거는 서울시장이 국토교통부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서류라고 봐야 되겠지요?

<000 주무관>

제가 조항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시행령 38조 정도에 보시면 건축사 징계는 국토부 장관이 서울시장한테 위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도지사, 인천광역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징계요청한 건입니다.

<000 위원>

그냥 제가 이해한 바를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조치결과 공문을 보면 위반사항 발생 시점이 3년이 지나서 징계의결 요청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냥 종결이 된 것이지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결을 요청하는 주체였던 것 같은데, 서울시가. 그런데 요청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것이지요? 맞나요?

<000 주무관>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 장관이 서울시장이 되는 거고, 시도지사는 각 시군구 허가권자가 되겠지요. 그러면 저희 쪽에 징계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요청한 날로부터, 적발 일자로부터 3년인 거고, 국토부 장관이 저희가 되는 거니까 저희가 허가권자에게 징계시효가 3년이 지났으니 징계요청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저희가 붙임으로 징계요청 서식이나 위반현황 양식을 따로 보내드린 거는 저희가 보내드린 검토자료만으로는 일단은 3년이 지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허가권자가 추가로 2018년이 아니다, 아니면 징계시효가 3년이 지났다고 하지 않으면 추가 요청을 해라 이런 내용인 거거든요.

<000 위원>

그러면 이 공문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개인정보, 그리고 영업상 비밀 이렇게 생각하신 건가요?

<000 주무관>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한 게 저희가 징계의결 요구를 하고 나서 징계의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불문이 나올 수도 있고, 기타 징계 양정에 따라서 징계를 매길 수가 있는데요. 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거거든요. 이게 어떤 징계를 저희가 처분을 하든지 아

니면 안 하든지, 아니면 징계시효가 지났든지 이거는 일반인한테 공개되게 되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개인 일반건물이 아니고 집합건물에 속하기 때문에 다분히 저희는 민원 소지도 있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000 위원>

건축기획과-21071 이 공문을 보면 인천광역시 [REDACTED] 관련이다 이것만 빼면 사실 공개하더라도 특별히 개인정보가 노출될 것이 있나요?

<000 주무관>

건축물에 대해서 특정한 사용검사 기간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도시건축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요청을 하든 안 하든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회신해 드린 인천광역시에서 정보공개 비공개를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는.

<000 위원>

여기 그런데 건축사 000 씨하고 000 씨 두 분 관계는 혹시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착공신고서 할 때는 000 건축사가 했는데 사용검사신청서에는 000 건축사로 되어 있잖아요.

<000 주무관>

그 관계까지는 저희가 사정을 알지 못하거든요.

<000 위원>

다른 추가 질문 있으신지요? 없으면 일단 주무관님 잠깐 나가 계시고 저희가 의결한 다음에 돌아와 주세요. 000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000 위원>

저는 문서를 검토해 보고 했을 때 부서의 의견대로 6호, 7호 해서 비공개하는 의견을 생각했는데요. 일단 저는 그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0 위원, 000 위원>

저도 기각 의견입니다.

<000 위원>

동의 의견 주셨고요. 그다음에 000 위원님.

<000 위원>

고민이 되는 게 6, 7호는 적용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기왕 한다면 저는... 그런데 이게 인사관리의 사항이 될 수가 있나요?

<000 위원>

인사는 아닙니다. 건축사 자격에 관한 것이어서요.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6호 정도라고는 볼 수 있고, 5호는 안 될 것 같습니다.

<000 위원>

사실 저는 공문 두 건에 첨부자료 빼고 앞에는 부분공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공사현장이 특정되는 주소만 지우고 나머지는 공문 내용이 사실 그렇게 사생활 침해되는 내용이 없어서 참고자료 빼고 공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부분인용으로 말씀드립니다.

<000 위원>

참고자료 빼고 전부 다 공개해도 된다고 보시나요?

<000 위원>

공문 자체는 한 페이지짜리여서 거기에는,

<000 위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보낸 서울특별시청 수신으로 한 이 문서 말씀이지요?

<000 위원>

두 건이 있지 않습니까. 위법보고랑 조치 이 두 건인데요.

문서번호가 밑에 도시건축과-16731이랑 도시건축과-21071 번호가 매겨진 두 개 공문 자체는 그냥 건설현장 이름만 지우면 이런 보고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비공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첨부서류에 조금 그런 상세한 당사자가 누군지 이

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첨부문서는 공개해도 되겠습니다마는.

<000 위원>

부분공개 의견 주셨고요. 공문서 양쪽에서 보낸 것 중에 위치만 삭제하고 공개 다해도 된다 이런 의견이신걸로 이해됩니다.

요즘 건축사들이 요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겨서 징계건 이런 게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 건도 아마 이 사람들 어떤 직업의 자유나 이런 것도 문제가 돼서 공개가 되는 게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 주심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걸로 하고요. 부분공개 의견 하나 있었다는 점을 회의록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무관님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집계결과 참석위원 5명 중 4명이 이의신청건을 기각한다는 의견이고, 한 분이 부분공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수 의견으로 본 안건을 기각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23-81호**는 “기각”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번호 2023-82 이의신청 】**

안건명 : 이의신청답변서(이상반응 역학조사서)

<000 위원>

마지막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3-82호** 감염병연구센터 소관 이의신청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소관부서 담당자께서는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00 주무관>

저는 감염병연구센터의 000 주무관입니다.

<000 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역학조사서를 역학조사관이 작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질

병관리청에 가서 최종적인 심의를 받는데 서울시에서 작성하는 역학조사서하고 질병관리청에서 최종심의 결정 이루어지는 그 결과하고 다른 경우가 되게 많나요?

<000 주무관>

일단은 서울시에서 작성한 역학조사서를 바탕으로 해서 질병관리청이랑 의견을 1차 의견조회, 2차 의견조회 해서 시도에서 다시 검토를 두 번을 거치고요. 그거를 또 참고로 해서 질병관리청에서 피해조사반 회의, 전문위원회 회의를 해서 각종 전문의가 참석해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백신 이상반응을 인과성평가를 하는 것은 1차적으로 하는 인과성평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000 위원>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결과가 많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000 주무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000 위원>

그게 상당수라고 봐야 됩니까?

<000 주무관>

아주 상당수는 아니지만 달라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000 위원>

서울시에서 만드는 역학조사서에 주로 기재되는 내용이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이 대부분인가요?

<000 주무관>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후에 이상반응이 생겨서 이분들이 피해보상을 신청한 것이고, 백신과 이상반응 간에 인과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밝혀내는 것이 역학조사관님들의 주 역할이거든요.

<000 위원>

이해관계자들의 시시비비가 되게 많을 수 있다고 우려를 하시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그 이해관계자들이 시시비비를 많이 건 경우  
우가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공개되지 않더라도.

#### <000 주무관>

그렇게 표현을 한 이유는 제가 질병관리청에 역학조사서를 공개해 달라는 서울시의  
이런 요청이 있었고, 저희들이 서울시 내에서는 질병관리청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문의를 드렸을 때 질병관리청에서  
도 이런 케이스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역학조사서는 비공개로 여태까지 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청자 본인이 제출한 의무기록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공개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질병관리청의 최종 심의결  
과를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서울시에서 만약에 역학조사서를 사전에 공개했을 때  
는 그게 질병관리청과 시도의 의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지침대로 일하는 시  
도의 그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 <000 위원>

그리고 저희 마지막으로 여기 자료 중에 30만 원 이상 피해보상 정보공개심의회 보고서  
2쪽을 보면 2023년 4월 18일에 심의안건 결정에 대해서 부분인용된 부분이 있거든요.  
타 요인에 의한 질환 발생 가능성 이하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개, 그다음에 6  
호 관련된 것은 비공개로 했네요. 그런데 이 부분공개한 부분이 저희 지금 대상 사  
안하고 다른 점이 있나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 <000 주무관>

과거에 얘기를 들었을 때는 질병관리청에서 2021년 8월 30일자에 이상반응 인과성평가 관  
련 정보공개 기준 이 공문을 내렸는데요. 본인들은 이렇게 비공개를 하라 이렇게 내렸는데,  
질병관리청에 정보공개 요청을 했을 때 담당자가 이런 정보공개 기준을 숙지를 못하고 역학  
조사서를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을 조금 수정검토하면서 최종적으로는 비공개하  
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런 대응방안을 전임자가 내부검토 문서로 작성을 하고 갔습니다.

<000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약간 예외적이라는 말씀이지요?

<000 주무관>

맞습니다.

<000 위원>

역학조사관 소속이 어디로 돼 있어요?

<000 주무관>

일단 시도는 역학조사관은 지금 감염병연구센터입니다.

<000 위원>

여기 역학조사관 성명 공개라고 돼 있고, 정보공개법 9조 1항 6호 마라고 돼 있는 데요. 이분 소속이 역학조사관은 대부분 임명을 해서 지자체 소속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아니면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겁니까?

<000 주무관>

질병관리청에도 역학조사관님이 다수 계시고요. 시도에 역학조사관님들도 지금 다수 계십니다.

<000 위원>

그러니까 시도나 질병관리본부에서 임명하는 거지요?

<000 주무관>

네. 저희들 자체적으로 채용이,

<000 위원>

그러면 이게 9조 1항 마가 아니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신분 아닙니까? 역학조사관은? 임기제나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공무원이 있는데요.

<000 주무관>

시도의 역학조사관님들은 대부분 기간제 인력이십니다.

지금 시도의 역학조사관님은, 지금 아마 다른 부서에도 역학조사관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전체는 아니고요. 지금 피해보상 관련으로 해서 일하시는 역학조사관님은 감염병연구센터에 소속이시고, 이분들은 공중보건의입니다.

<000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까, 이분들은?

<000 주무관>

공중보건의는 병무청에서 보내주신 인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000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지요?

일단 주무관님 잠깐 나가 계시고 저희가 의논한 다음에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주심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000 위원>

지금은 지침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서 이것에 따라 가지고 거의 기계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 같아서요. 혹시나 부분공개하는 부분들이 생기면 행정 일선에 혼란이 생길 것 같고 파장이 커질 것 같아서요. 기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000 위원>

기각 의견 주셨습니다.

<000 위원, 000 위원, 000 위원>

주심위원님 의견과 마찬가지로 기각 의견입니다.

<000 위원>

저도 주심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무관님 들어오라고 연락 주십시오. 의결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계결과 참석위원 5명 중 5명이 이의신청건을 기각, 비공개 결정한다는 의견이므로 본 안건을 기각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23-82호**는 “기각”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